

『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2일

나. 발 의 자 : 이선우, 강승수, 김재우, 김춘남, 박교상, 송용자
이지연 의원(7인)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1월 26일

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이 선 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최근 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복지를 보장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(안 제6조)
-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비밀준수의 의무(안 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10. 2. ~ 10. 10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- 본 『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』은
 -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,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임.
 -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전국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,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집계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36,416건으로 전년 대비 약 6.6% 증가했음.

- 구미시 신고 건수 또한 2018년에만 60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, 이는 접수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숨겨진 사건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됨.

〈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〉

(단위 : 건, %)

구분	전 국		구 미		비고
	신고접수건수	전년대비 증가율	신고접수건수	전년대비 증가율	
2014	17,782		113		
2015	19,203	8.0	120	6.2	
2016	29,671	54.5	212	76.7	
2017	34,166	15.1	349	64.6	
2018	36,416	6.6	604	73.1	

* 신고접수건수 : 아동학대 의심사례 포함(해외사례 제외)

○ 검토 결과,

-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사후적 조치에서 그치지 않고,
-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 근거법의 취지에 맞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「아동복지법」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우리시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